#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59

발의연월일: 2021. 11. 17.

발 의 자 : 임이자 · 구자근 · 권명호

권영세 · 김성원 · 김형동

박대수 · 서일준 · 양금희

이명수 · 홍석준 의원

(11인)

#### 제안이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별도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이의 수립과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대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전망,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되어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별도의 대 책 추진에 따른 실익이 없음.

이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으로 통합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 을 정비함.

#### 주요내용

- 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장거리이 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추가함 (안 제11조제2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 신설).
- 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 획으로 통합하고, 동 종합대책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폐지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 법률 제 호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3의6.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3의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안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3의4. (생 략) 3의2. ~ 3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의 발생 현황 및 전망 <신 설> 3의6.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 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 력 3의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신 설> 발생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방 <u>안</u>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장거리이동대 기오염물질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 · 도지사의 의 견을 들은 후 제14조에 따른 장

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장거리이동대 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대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전망
- 2.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 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 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 5.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 물질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
-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 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대책위원회) ① 장거리이동대기 오염물질피해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장거리이동대 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 3.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 물질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삭 제>

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 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 정기관의 공무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 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종합대책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추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 원회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단을 둔다.
- ⑥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장 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